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37

「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9일

상주시의회



「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정의 (안 제2조)
- 다. 책무 (안 제3조)
- 라.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·시행 등 (안 제4조)
- 마. 안전교육 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16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ajaja440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6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

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

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